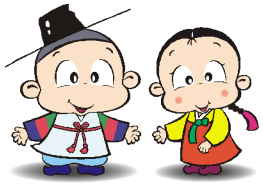

제264회 임시회
2007. 10. 18(목)

건설문화위원회 소관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

건설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일

3. 제안이유

○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청주시 지역에 시행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청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함(안 제3조)

○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차량 종류별 검사주기(안 제2조)

- 차령 2년경과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내
- 차령 3년경과 비사업용 승용외 자동차는 1년 이내
- 차령 4년경과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이내

5. 검토의견

○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

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고

○ 다만, 자동차 검사 업소의 준비와 차량소유자들에게 홍보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